

# 학대 및 방치 신고

## 돌봄 제공자 안내

2018년 11월



### 누구에게 신고해야 합니까?

- 돌봄 제공자가 지적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유급으로 돌봄을 제공할 경우, 필수 신고자로 간주됩니다. 돌봄 제공자는 학대나 방치, 유기, 금전적 착취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워싱턴주에는 다른 단체 (법률 집행 기관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) 역시 부당 처우가 의심될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있습니다.
- 필수 신고자는 근무 시간뿐 아니라 항상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돌봄 제공자가 아동 또는 취약 성인의 부당 처우 의심 사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:
  - 돌봄을 받는 사람이 계속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돌봄 제공자는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 일부의 경우, 미신고는 형사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.

### 알고 계셨습니까?

신체적, 성적, 정신적 학대와 방치, 유기, 금전적 착취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.

돌봄 제공자:

- 취약 성인의 학대와 유기, 방치, 금전적 착취, 아동의 학대와 방치를 막을 힘을 갖고 있습니다.

돌봄 제공자는 반드시 다음 책임을 이행하여 학대와 방치를 예방해야 합니다:

- 지원을 받는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러한 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 교육과 지원을 주문합니다.
- 상황을 평가하고 관찰한 바에 따라 행동합니다.
- 개인의 지원을 변경해야 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독자와 DSHS에 알립니다.

### 적신호 - 부당한 대우의 표시

#### 취약 개인

- 열악한 개인 위생
- 날씨에 적합하지 않은 옷차림
-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나 상처
- 이유를 알 수 없는 속옷의 얼룩이나 찢어짐, 혈흔, 멍이나 출혈, 성기 또는 항문 부위의 통증이나 가려움
- 고립 또는 회피
- 이유를 알 수 없는 행동 변화
- 우울증이나 슬픔
- 수면 또는 섭식 장애
- 확인할 수 없는 이유에 따른 모호한 신체적 불만
- 가치 없다는 느낌에 대한 언급
- 특정 돌봄 제공자 근무 시, 특정 개인의 방문 시, 또는 특정인(예: 버스 운전자) 주변에 있을 경우 울거나 호전성을 보임
- 압박성 궤양
- 개인 소지품 분실에 대한 불만



#### 가정 환경

- 충분한 정신적 자극이나 정서적 지지 부족
- 건강 또는 안전 상의 위험을 나타내는 증거 또는 그 존재
- 물리적 또는 화학적 구속
- 부적절한 음식 제공
- 언어 폭력, 괴롭힘 또는 위협
- 음식이나 돈을 이용한 금전적 착취

## 신고 시기

- 취약 성인과 관련된 신고는 [RCW 74.34](#)에 따라 "즉시" 해야 합니다.
- 아동 학대와 관련된 신고는 [RCW 26.44](#)에 따라 48 시간 이내에 "즉시" 해야 합니다.

## 신고 접수 기관

1-866-END-HARM (1-866-363-4276)에 전화하여 아동 학대 또는 방치, 취약 성인 학대, 유기, 방치, 금전적 착취 의심 사례를 신고합니다. 전화 신고는 적절한 기관에 전달됩니다. 취약 성인의 경우, [온라인](#)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

### 아동 보호 서비스:

- 18세 미만 아동
- 양육 보호를 받거나 면허 소지 직원이 근무하는 주거 프로그램 참여 아동 (그리고 가해 혐의자가 돌봄제공자인 경우)

### 성인보호서비스:

- 취약 성인
- 18-21세(가해자가 양육 보호 또는 면허 소지 직원이 근무하는 주거 환경과 관련이 없는 경우)

### 요양시설 서비스:

- 기관/서비스 제공자 실무 문제(성인 면허 또는 인증 주거 환경)

### 법률 집행기관 신고:

- 잠정적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, 법률 집행기관 또는 아동 보호 서비스에 신고합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기관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.
- 잠정적 피해자가 취약 성인인 경우, 돌봄 제공자는 법률 집행기관과 함께 성인 보호 서비스에 해당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:
  - 성폭력
  - 신체적 폭력 (수혜자 간 폭력 외)
  - 위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행동
- 신체 상해를 일으켜 응급 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폭력 (수혜자 간 폭력):
  - 등, 얼굴, 머리, 목, 가슴, 사타구니, 안쪽 허벅지, 엉덩이, 성기, 항문 부위 상해
  - 골절
  - 목조르기 시도
  - 같은 수혜자 사이의 폭력 또는 같은 수혜자가 포함된 폭력
  - 위해에 대한 공포
  - 상해 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수혜자나 법적 대리인, 가족이 요청한 경우

**학대 및 방치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하십시오. 누군가 위험에 처했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911로 신고하십시오!**

### 법의학관/검시관:

- 학대, 방치, 유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

## 신고 시

해당 신고 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문을 받습니다. 모든 정보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, 신고를 하십시오:

- 잠정적 피해자의 이름, 주소, 연락처 정보
-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- 부모 또는 보호자의 연명과 이름, 주소
- 가해 혐의자의 이름, 주소, 연락처 정보
- 사건에 대한 상세 설명
- 유사한 사건이나 혐의 등 다른 중요 정보
- 조사관의 후속 질문을 위한 연락처 정보

## 학대 및 방치 예방:

- 학대, 유기, 방치, 금전적 착취 징후나 현상에 대해 배우십시오.
- 돌봄을 받는 사람과 대화하십시오. 경청을 통해 도움을 줄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- 학대와 방치가 무엇인지, 건강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십시오.
- 다음을 파악하도록 도와주십시오:
  - 믿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.
  - "아니오"라고 말하는 방법
  -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 계획.



## 출처 및 자료:

- [취약 성인의 학대, 방치, 자기 방치, 금전적 착취 신고](#),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' Adult Protective Services(보건사회부 성인보호서비스)
- [아동 학대 또는 방치 신고](#), Department of Children, Youth and Families(아동청소년가족부)
- [필수 신고자 도구](#), Department of Children, Youth and Families (아동청소년가족부)